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536

제출년월일 : 2014.8.29.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만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14년 5월 2일 기초연금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지급 대상자)내용 중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용어를 '기초연금 수급자'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개정**
-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맞추어 안산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용어 변경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기초연금법 제1조 ~ 제4조

○ 노인복지법 제2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4. 7. 08. ~ 2014. 7. 28.(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붙임

○ 방침계획서

○ 현행 조례(전문)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4조에 따라” 로, “노인장수수당(이하 “장수수당” 이라 한다)” 를 “노인장수수당” 으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에 “이라 함은” 을 “이란” 으로, 같은 조 제2호에 “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를 “이란 이 조례에 따라” 로 한다.

제3조 중 “안산시” 를 “안산시(이하 “시” 라 한다) ” 로 하고, 단서조항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를 “기초연금수급자” 로 한다.

제4조제2항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를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1호서식에 의한” 을 “제1호서식에 따른” 으로, “없을 경우에는” 을 “없는 경우에는” 으로, “제2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를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첨부하여” 로, 같은조 제3항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4조에 따라” 로 한다.

제6조 중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로, 같은 조 제1호에 “안산시에서” 를 “시 관할 구역 외로” 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사회복지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박 광 옥
	담당·팀장 직위·성명	노인복지계장 차 현 실
	담당자 성명·전화	김 서 현 (행정 3351)

[별지 제1호서식]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신청서

①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②지급계좌	예 금 주		은행명		계좌번호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동장 귀하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김서현 2014-08-22 15:56

[별지 제2호서식]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신청 위임장

위임한 사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위임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수당 지급 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김서현 2014-08-22 15:56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책임을실천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장수수당(이하 "장수수당"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조에 따라----------노인장수수당----------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제2조(정의)** ----------뜻은---------- 1. -------이란---------- 2.--------이란 이 조례에 따라----------
제3조(지급대상자)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수당지급 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제외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기초연금수급자--------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① (생 략)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수노인 중 만 100세가 되는 날에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김서현 2014-08-22 15:56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당의 신청 및 지급) 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제2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15일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수당의 신청 및 지급)** ① ----------제1호서식에 따른----------없는 경우에는----------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첨부하여---------- ② (현행과 같음) ③----------제4조에 따라----------
제6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안산시에서 전출하였거나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더 이상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 3. (생 략)	**제6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 ----------시 관할 구역 외로---------- 2. ~ 3.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대상자의 관리) 동장 및 시장은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한다.	**제7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김서현 2014-08-22 15:56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신청서

①지급 대상자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연락처 :)				
②지급 계좌	예 금 주		은행명		계좌 번호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장수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동장 귀하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신청서

①지급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②지급 계좌	예 금 주		은행명		계좌 번호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장수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동장 귀하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김서현 2014-08-22 15:56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신청 위임장

위 임 한 사 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신청 위임장

위 임 한 사 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수당 지급 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김서현 2014-08-22 15:56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2536

제안년월일 : 2014년 8월 29일
제 안 자 :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조문과 연관된 다른 조문도 개정사항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수수당”을 “노인장수수당(이하 “장수수당”이라 한다)”으로 수정함 (안 제2조제2호)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0-14 16:45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수수당”을 “노인장수수당(이하 “장수수당”이라 한다)”으로 한다.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0-14 16:45

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책임을 실천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장수수당(이하 "장수수당"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조에 따라 ---------- 노인장수수당 ----------.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제2조(정의)** ---------- 뜻은 ----------. 1. --------- 이란 ----------. 2. --------- 이란 이 조례에 따라 ----------.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노인장수수당(이하 "장수수당"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
제3조(지급대상자)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수당지급 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제외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 기초연금 수급자----------.	**제3조(지급대상자)** (개정안과 같음)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① (생략)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수노인 중 만 100세가 되는 날에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의회사무국 정현석 2014-10-14 16:45